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행자 안전의 중대한 위험 발생시 대집행 계고 기간 단축〉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2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행자 안전의 중대한 위험 발생시 대집행 계고 기간 단축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5. 19.
3. 회부연월일 : 2026. 5.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적치물·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도심 이면도로 등에서는 불법 점용 구조물과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보행안전에 대한 긴급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행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1. 보행자 안전의 중대한 위험 발생시 대집행 계고 기간 단축

현행	개정안
第3條(代執行의 節次)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u>相當한 履行期限을 定하여 그 期限까지 履行되지 아니할 때에는 代執行을 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第3條(代執行의 節次) ① ----- ----- -----1 <u>0일 이상의 상당한</u>----- ----- -----. ----- ----- ----- ----- ----- ----- ----- -.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행 공간에서의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

현 행	개 정 안
② 義務者が 前項의 戒告를 받고 指定期限까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當該 行政廳은 代執行令狀으로써 代執行을 할 時期, 代執行을 시키기 爲하여 派遣하는 執行責任者の 姓名과 代執行에 要하는 費用의 概算에 依한 見積額을 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非常時 또는 危險이 切迫한 境遇에 있어서 當該 行爲의 急速한 實施를 要하여 前2項에 規定한 手續을 取할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手續을 거치지 아니하고 代執行을 할 수 있다.	<u>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할 수 있다.</u> ③ -----제1항·제2항의----- ----- ----- ----- ----- ----- ----- ----- ----- -----. ④ ----- ----- -----제3항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집행을 계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대집행’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¹⁾).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적치물·위반건축물 등(이하 “불법 시설물 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당해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제거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이러한 사례에서 불법 시설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은 행정대집행의 계고기간²⁾ 단축을 통해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담보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상 계고기간으로 규정된 ‘상당한 기간’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으로 변경하고,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계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10일을 기준으로 대집행의 긴급성 여부를 나누고 있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일을 기준으로 긴급성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 제3조제3항에서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고, 영장통지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³⁾, 개정안과 같이 ‘보행자 안전 중대 위험’이라는 한정된 사유에 대해서만 기간 단축 특례로 긴급성을 인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포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개별사안의 구체적 위험 정도를 따져 특례사항을 규정⁴⁾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

3) 보행안전 외에도 재난안전, 공중위생, 공공질서, 생명·신체 보호 등 다양한 행정상 긴급상황이 포함됨.

4) 특례규정의 예

「건축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을 고려해야 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서는 포괄적인 긴급대응 사유를 규정하고, 개별법에 구체적인 긴급대응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임.

-
-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33